

인천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가합622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원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순

변론 종결2022. 7. 7.

판결 선고2022. 8. 18.

주 문

1. D와 피고 사이에 2015. 9. 25.경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5. 10. 1.경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합원 등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이고, 피고는 D의 아들이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경위

1) 원고는 2009. 9. 23. E에게 29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였고, D는 2014. 9. 25. 그 소유의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37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G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금 631,431,96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15. 9.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3957호로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을 공탁하고, 2015. 10.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1.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D는 2015. 9. 15.경 위 공탁금을 모두 출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1. 4.경 위 수용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4) 원고는 2015. 12. 2. D를 상대로 하여 D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8. 'D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6.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등

D는 2015. 9.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2015. 10. 1. 100,000,000원을 각 증여하였다(위 각 증여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H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받은 150,000,000원(= 2015. 9. 25.자 증여 50,000,000원 + 2015. 10. 1.자 증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2항), ① 원고는 당초 D가 위 출급한 공탁금을 D의 가족 중 누구에게 증여했는지 알지 못하여 D의 처와 피고를 포함한 자녀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을 통해 D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150,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비로소 그 취소원인을 알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2015. 9. 25.경 및 2015. 10. 1.경 체결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20. 9.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가 위 제척기간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D가 2015. 9. 15.경 위 공탁금을 출급함으로써 원고가 D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므로 D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채권이 아니라¹⁾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 및 D의 수용보상금 출금으로 인하여 성립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는 그 성립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도의 채권이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E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1) D의 채무초과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에 아래 표와 같이 이미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적극재산	H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1 생략)	62,550원	62,550원
H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2 생략)	0원	0원	
H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3 생략)	64,000,000원	64,000,000원	
H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4 생략)	0원	0원	
H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5 생략)	0원	0원	
100,000,000원 수표(수표번호 1)2) 위 수표금 중 5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2015. 9. 25. 피고에게 증여되었다.	100,000,000원	0원	
100,000,000원 수표(수표번호 J)3) 위 수표금 10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2015. 10. 1. 피고에게 증여되었다.	100,000,000원	100,000,000원	
적극재산 합계	264,062,550원	164,062,550원	
소극재산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290,000,000원	290,000,000원
소극재산 합계	290,000,000원	290,000,000원	

2) 사해행위 등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D가 피고에게 2015. 9. 25.

50,000,000원을, 2015. 10. 1. 100,000,000원을 각 증여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리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는 2015. 9. 15. 공탁금 631,431,960원을 자신 명의의 H은행 계좌 2개에 나누어 입금받는 방식으로 출금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10일 후에는 적극재산이 264,062,550원에 불과하였을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 단기간에 소진된 점, ② D는 위 공탁금 중 400,000,000원을 2015. 9. 15.에 신규로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는데, 그 당일 바로 위 400,000,000원 전액을 출금한 후 신규 계좌를 2개 개설하여 1개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는 50,000,000원을, 다른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는 35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9일 후인 2015. 9. 24. 위 2개 계좌에 입금된 400,000,000원을 전액 출금하였는바, 이러한 거래방식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D에게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현금의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창근

판사정승진

판사박승균

1) D는 E의 보증인이 아니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직접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2) 위 수표금 중 5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2015. 9. 25. 피고에게 증여되었다.

3) 위 수표금 10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2015. 10. 1. 피고에게 증여되었다.